



성과 계약서

(도지사 → 도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2022. 1.



경상북도 기관장 성과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기관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와 기관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②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성과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기관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법, 조례,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기관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기관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 6 조(경영목표) ①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1>과 같으며, 매 사업연도별로 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결정한다.

② 기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7 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경영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에 관련한 기본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기관장 성과계약평가 편람 및 실시계획 등에 따른다.

제 8 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① 기관장의 성과평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한다.

② 도지사는 대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편람 및 실시계획에 따른다.

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명 이상의 기관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금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기관장에게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 9 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성과연봉), 부가급여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성과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기본연봉) ① 기관장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금78,9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기관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차년도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

제 11 조(성과급)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률에 기본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매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퇴임월 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퇴임월 중 2명 이상의 기관장이 재임한 경우에는 당해 월중 근무일수가 더 많은 기관장의 재임월수에 산입한다.
- ④ 기관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 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할 경우 보수의 가감 지급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지급분과 반환분을 정산하여 중도 퇴임하는 기관장에게 지급 또는 반환받아야 한다.

제 13 조(퇴직금, 복리후생 등) 퇴직금 및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은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 14 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관계 규정 변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 15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 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

제 16 조(권리의 귀속)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17 조(원천징수)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 18 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

2022. 1. 27.



경상북도지사
이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치영



【별표1】 성과계획서

2022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업무성과 계획서

1. 기관장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임기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치영	2021. 1. 1. ~ 2023. 12. 31.

2. 업무성과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지표명	비고
책임경영 (70%)	기관 경영평가 결과 (50%)	지속가능경영 (16.5)	기관 경영평가 결과 환산적용 (100%→50%환산)
		경영성과 (22.5)	
		사회적 가치 (11)	
	도정 연계성 확보 노력 (20%)	도정 연계성 (10) 도 발전 기여도 (10)	담당 부서 평가
성과목표 이행실적 (30%)	기관장 성과목표 이행실적 (30%)	성과계획 달성을 환산적용	기관장별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을 여부 평가



3. 성과목표 및 실행계획

경영목표	세부지표	목표값	가중치	실행계획
1. 청소년안전망 및 예방상담 강화	1. 청소년 상담 및 심리 검사 지원	15,000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및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 검사, 기타 상담 서비스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지원	2,210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도 및 기술훈련 등 자립지원
	3. 청소년 및 지도자 교육	8,500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부모, 상담자원봉사자 등 교육 실시
2. 청소년 잠재 능력개발 및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	1.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10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 전문연수, 안전교육, 포상제 직무연수
	2. 청소년활동 지원	90,000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이 행복한 수련 활동 운영	1.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인원(수)	7,700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을 통한 유지 강화
	2.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10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개선 *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수요자 욕구 반영
	3.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12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 외부전문기관 안전점검 실시
4. 현장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1. 시군 센터 지도·지원	80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컨설팅, 슈퍼비전, 직무 연수 지원